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 처리요령(IV)

이번 호도 지난 호에 이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처리 요령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사고 현장 정리 및 목격자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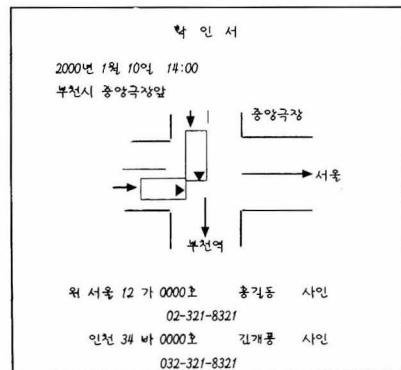
사고발생 직후 사고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어느 정도 끝나면 다른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저분한 사고현장을 어느 정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고속도로 노면에서의 장시간 주차는 불법으로 현장에서 가까운 대피소 또는 휴게소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 사고현장의 상황을 스프레이로 표시하거나 카메라 등으로 현장촬영을 하는 등 사고현장의 상황이 정리된 후에는 다른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저분한 사고현장을 어느 정도는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고현장에서의 목격자를 확보해 두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중요하다. 카메라로 사고현장을 촬영할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의 번호를 함께 촬영한다든지 또는 사고현장 주변의 목격자 연락처, 이름만이라도 확보해 두도록 하여 사고 내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바뀌지 않도록 조치해 둘 필요가 있다.



사고 내용 확인

사고내용은 될 수 있는 한 메모 형식으로 간략하게 써서 확인해 주는 것이 좋다. 명함 뒷면을 이용해도 되고 메모지를 이용해도 된다. 간략하게 자필로 쓰고 서명을 하든지 상대방이 써주고 서명을 받아도 된다. 굳이 어떤 형식을 갖출 필요도 없으며 무인을 찍는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주의 : 피해자라고 간혹 면허증이나 자동차 검사증을 요구하여 갖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가해자인 경우라도 타인의 신분증이나 차량에 비치해 놓게 되어있는 검사증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은 불법이다.



소액사고의 보험처리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 현장에서 쌍방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양쪽이 만족스럽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범퍼만 살짝 긁혔는데도 “출고한지 한달 밖에 되지 않은 새차인데 30만원은 달라.”거나 “외제차인데 범퍼 하나만 도색하는데도 50만원은 든다.”는 등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또는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여 납득이 가지 않게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쪽의 차량번호, 운전자 이름, 연락처, 보험회사 이름, 간단한 사고 메모 등을 적어서 주고 상대방 차량번호, 차종, 운전자 연락처 등을 받아 적은 후 “지금 보험회사에 접수하겠으니 어느 공장으로 가는지 연락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헤어진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한다.

- 상대방 차량번호, 연락처, 운전자 이름 정도는 메모해 둔 후 헤어진다.

확인서

1999.12.10. 19:00경
인천대공원앞 도로상
신호대기중인 차량 후미충돌
운전자 : 김갑동
차량번호 : 서울 12가 0000호
연락처 : 000-0000-0000
보험회사 : ××화재보험
본인이 정지중인 차 후미를 추돌했음.

가벼운 인사사고

교통사고의 경우 아무리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특성상 절대로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된다.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자에게 충격이 있었던 경우에는 무조건 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설사 자동차는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튀어나온 어린이가

부딪혔다든지, 자동차가 뛰어오는 사람을 보고 멈췄는데 뛰어오는 사람이 미쳐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다든지 하는 경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의 잘못도 있고 하니까 미안해서 괜찮다고 그냥 가려고 할 때 운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기까지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이런 경우 그냥 지나쳤다가는 낭패보기 쉽상이다. 교통사고의 특성상 즉시 아픈곳이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가 하루, 이틀이 지난후 통증이 있을 때 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운전자를 도주차량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꼼짝없이 운전자는 뺑소니 차량 운전자로 몰리게 된다. 이런 경우 부상자가 괜찮다고 하여도 근처 병·의원으로 데리고 가 진찰을 받게 한다. (피해자의 부상 유무에 관계없이 병·의원으로 데리고 갔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되는 것인가) 또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것도 괜찮다고 하며 거절하는 경우에는 “정말 별 이상이 없어서 그냥간다.”는 내용으로 쪽지형식의 간단한 확인서 만이라도 받아두어야 한다. 그래도 괜찮다고 하며 피해자가 도망치다시피 가버리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사고현장 주변의 사람(목격자)에게 부탁하여 간단한 확인서라도 받아두던지 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신고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가 없는 교통사는 처벌도 없으므로 부담없이 신고하여도 된다.) 가벼운 인사사고의 경우 파출소 순경들도 괜찮을 거라고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라도 담당 순경의 이름을 알아 두든지, 파출소 근무일지에 내용의 확인을 남겨두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아무리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하여도 사람이 부딪힌 경우에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